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5월 6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29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신규채용)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규정 제8조에 의한 직원 채용은 공사 내외부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하여야 하고, 서류전형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중 3개 이상 전형방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한다. 단, 일반직 2급(계약직)의 경우 채용절차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